



서울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

[시행 2019. 7. 10] [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169호, 2019. 7. 10, 일부개정]

서울대학교(학사과) 02-880-5042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서울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에 대한 강사료 지급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강의의 구분과 정의) 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보통강의는 교과과정 학점 구조에서 강의로 정한 수업을 말한다.
2. 특수강의는 교과과정의 특성에 따라 대학(원) 및 자유전공학부, 기초교육원에서 특수한 교과로 정하여 진행하는 수업을 말한다. [개정 2019. 7. 10.]
3. 실습강의는 교과과정 학점 구조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실험, 실습, 실기 등으로 정한 수업을 말한다. [신설 2019. 7. 10.]
4. 특별강의는 공개강좌 등 교과과정에서 정한 수업 이외의 강의·강연을 말한다.
4. [삭제 2019. 7. 10.]
5. [삭제 2019. 7. 10.]

제3조(강의 책임시간) ①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교과과정 학점 구조에서 정한 강의를 기준으로 9시간으로 한다. 다만 미술대학, 음악대학 및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의 실기지도를 제외한 실습강의의 실험·실습·실기 시간은 2시간을 1시간으로 계산한다. [개정 2019. 7. 10.]

- ② 전임교원 이외의 사람이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의 강의시간은 제1항의 기준을 준용한다. [신설 2019. 7. 10.]
- ③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을 일부 면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④ [삭제 2019. 7. 10.]

제4조(강사료의 지급) ① 초과강사료는 실제로 강의한 시간수가 책임시간을 초과한 전임교원에게 초과된 시간수에 의하여 지급한다. [개정 2019. 7. 10.]

- ② 강사료는 총장의 임용에 따라 강의를 담당한 강사에게 강의담당 시간수에 의하여 지급한다. [개정 2019. 7. 10.]
- ③ 강사에게는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지급 기준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[신설 2019. 7. 10.]
- ④ 「서울대학교 겸임교원등 임용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비전임교원이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 총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여 지급한다. [신설 2019. 7. 10.]

제5조(강사료의 계산) 강사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한다.

1. 강사료는 매학기 1학점당 15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. [개정 2019. 7. 10.]
2. 시간수는 1시간을 50분 기준으로 계산한다.
3. 실습강의의 실험·실습·실기시간은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계산한다. [개정 2014. 1. 3., 2019. 7. 10.]

제6조(강사료의 지급기준액) 시간당 강사료의 지급 기준액은 매년도의 예산법위안에서 총장이 정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증액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[제목 외 부분 개정 2019. 7. 10.]

1. 명예교수가 강의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이 외국어로 강의하는 경우의 강사료 [개정 2019. 7. 10.]
2. 강좌별 수강인원이 80명 이상인 경우
3. 국내·외 저명인사의 강의 및 교과과정에서 정한 수업 이외의 특별강의에 대한 강사료

제7조(강사료 지급의 특례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한 교원에게도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[제목 외 부분 개정 2019. 7. 10.]

1. 시험시간
2. 교내 또는 국가적 행사로 인하여 휴강한 때
3.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학교가 임시 휴업을 하였을 때

제8조(강의시간표 및 교과목 담당) ① 각 대학(원)장은 매 학기초 2개월 전에 다음 학기 강의시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전항에 의하여 확정된 강의시간표 및 교과목 담당자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.

[조항삭제 2019. 7. 10.]

제9조(강사료의 지급) 각 학과(부)장은 매월 수업상황보고서를 대학(원)장에게 제출하고 각 대학(원)장은 교과목 담당자별 강사료가 지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 [개정 2014. 1. 3.]

제10조(강사료 지급기일) 강사료는 당월분을 익월 5일에 지급하되, 당해 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에 지급한다. 다만, 기타 규정·고용계약서 등에서 지급기일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부칙 <제2169호, 2019. 7. 10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채용 되는 강사부터 적용한다.